

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2019. . .

제 출 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출입 제한 규정상 해석이 모호한 조문을 삭제하여 출입 제한 행위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, 정치 및 종교 관련 행사의 사용허가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시설 활용도 제고 및 시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출입 제한 규정 일부 삭제(안 제4조제5호)
 -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사용허가의 제한 규정 일부 삭제(안 제7조제2호 및 제3호)
 - 단체 또는 개인의 정치 관련 행사의 경우
 - 종교적 의식, 포교활동을 위한 행사의 경우

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4조제5호를 삭제한다.

제7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호를 제2호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3조(수강료) ① <u>시장</u> 은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.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할 수 있다.	제3조(수강료) ① <u>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</u> 은 ----- ----- -----. -----	제3조(수강료) (개정안과 같음)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	②·③ (개정안과 같음)
제3조의2(수강료 면제) <u>시장은 수강 신청자</u>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에 의거</u>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. 다만, 수강료의 면제는 본인 이 원하는 1과목에 한한다.	제3조의2(수강료 면제) ① <u>시장은</u> ----- ----- ----- <u>경우에는</u> ----- ----- -----. -----	제3조의2(수강료 면제) (개정안과 같음)
1. ~ 7. (생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	1. ~ 7. (개정안과 같음)
< <u>신설</u> >	② <u>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u>	② (개정안과 같음)

<신 설>

제4조 (생 략)

제5조 (생 략)

제4조(출입 제한) 시장
은 다음 각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행
위를 한 사람의 경우
에는 출입을 제한할
수 있다.

1. 전염의 우려가 있
는 질병을 가진 사
람

2. 타인의 안전 또는
학습질서를 저해하
거나, 저해할 우려가
있는 경우

3. 시설 내에서 음주
또는 소란을 피우는
경우

4. 시설 또는 설비를
훼손할 우려가 있거
나, 허가 없이 건물
· 기물 또는 구조물
등의 시설을 훼손한
경우

5. 그 밖에 공공질서
와 선량한 미풍양속
을 해칠 우려가 있
다고 인정 되는 경
우

제5조 (현행 제4조와 같음)

제6조 (현행 제5조와 같음)

제4조(출입 제한) ----

-----.

1. ~ 4. (개정안과 같음)

<삭 제>

제5조 (개정안과 같음)

제6조 (개정안과 같음)

제6조(사용의 제한) 시
장은 다음 각 호의 어
느 하나에 해당하는
경우에는 시설의 사
용허가를 제한할 수
있다.

1. 공공질서 유지 및
미풍양속을 해할 우
려가 있는 경우
2. 시설 또는 설비를
훼손할 우려가 있다
고 판단되는 경우
3. 영리를 목적으로
하는 행사의 경우
4. 기타 평생교육원
시설 운영 목적에
위배되는 경우

<신 설>

<삭 제>

제7조(사용허가의 제한)
시장은 다음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
는 경우에는 시설의
사용허가를 제한할
수 있다.

1. 영리를 목적으로
하는 행사의 경우
2. 단체 또는 개인의
정치 관련 행사의
경우
3. 종교적 의식, 포교

<삭 제> (개정안과
같음)

제7조(사용허가의 제한)

-----.

1. (개정안과 같음)

<삭 제>

<삭 제>

	<u>활동을 위한 행사의 경우</u> <u>4. 그 밖에 평생교육원 시설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</u>	
<u>제7조(사용허가의 취소 등)</u>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육원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제한,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. 1. ~ 3. (생략) 4. 천재지변 또는 <u>기타</u>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5. <u>기타</u>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	<u>제8조(사용허가의 취소 등)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<u>그 밖의</u> ----- ----- ----- 5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 -	<u>2.</u> (개정안 제4호와 같음) <u>제8조(사용허가의 취소 등)</u> (개정안과 같음) 1. ~ 3. (개정안과 같음) 4. (개정안과 같음) 5. (개정안과 같음)
<u>제8조(사용료)</u> <u>제4조에</u> 의거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3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	<u>제9조(사용료)</u> <u>제5조에</u> 의거 시설의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<u>제9조(사용료)</u> (개정안과 같음)
<u>제9조(사용료의 면제)</u> 시장은 다음 각 호의	<u>제10조(사용료의 면제)</u> -----	<u>제10조(사용료의 면제)</u> (개정안과 같음)
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- 1. 2. (생략)
- 3. 기타 공공목적 및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

제10조(사용료의 반환)
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한다.

- 1.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: 사용료 전액 반환
- 2. 시 또는 평생교육원의 사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이 정지될 때 : 사용료 전액 반환
- 3.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허가

제9조

- 1. 2. (현행과 같음)
- 3. 그 밖에

제11조(사용료의 반환)

-. -----

-----.

- 1. ----- 그 밖의 -----
- 2. -----

----- 경우 -----
- 3. -----

- 1. 2. (개정안과 같음)
- 3. (개정안과 같음)

제11조(사용료의 반환)
(개정안과 같음)

- 1. (개정안과 같음)
- 2. (개정안과 같음)
- 3. (개정안과 같음)

취소원을 제출한 때 : 사용료 전액 반환 4.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1 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: 사용료의 100분의 90 반환 5.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당 일 사용허가 취소원 을 제출한 때 : 사용 료의 100분의 70 반 환	----- 경우 ----- 4. ----- ----- ----- ----- 경우 ----- ----- 5. ----- ----- ----- ----- 경우 --- ----- ---	4. (개정안과 같음) 5. (개정안과 같음)
<신 설> <u>제11조 · 제12조 (생 략)</u>	<u>제12조(변상 조치) 시설</u> <u>의 사용자가 고의 또</u> <u>는 과실로 다음 각 호</u> <u>의 어느 하나에 해당</u> <u>하는 행위를 한 경우</u> <u>에는 변상하여야 한</u> <u>다.</u> <u>1. 시설을 파손하였을</u> <u>경우</u> <u>2. 그 밖의 구조물이</u> <u>나 기물 등을 파손</u> <u>하였을 경우</u> <u>제13조 · 제14조 (현행</u> <u>제11조 및 제12조와</u> <u>같음)</u>	<u>제12조(변상 조치) (개정</u> <u>안과 같음)</u> <u>제13조 · 제14조 (개정</u> <u>안과 같음)</u>